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2017년 8월 구미낙동강승마길이 개장됨에 따라 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토록 하며, 승마길 및 하천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위치 및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개방시간, 휴장 및 사용제한 시기, 입장제한(안 제4조~제6조)

다. 오물 발생 최소한의 노력, 오물 처리 방법 및 재활용

(안 제7조~제8조)

라. 오물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 오물 수거 수수료 감면, 오물 수거

수수료 반환, 세입조치 등(안 제9조~제12조)

마. 사용절차와 방법, 사용자의 준수사항(안 제13조~제14조)

바. 예산지원 등(안 제15조)

사. 원상복구, 질서유지 감독(안 제16조~제17조)

아. 위탁 관리·운영(안 제18조)

자. 준용, 시행규칙(안 제19조~제20조)

3. 조 례 안 : 불 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하천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민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불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마길의 안전한 사용과 승마길 및 하천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구미낙동강승마길의 위치는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30-3번지로부터 선산읍 독동리 37-1번지까지의 제방 연장구간 17.9킬로미터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낙동강승마길”(이하 “낙동강승마길”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에 서 제2조의 위치에 개설한 승마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2조의 낙동강승마길에서 말을 타는 자를 말한다.
3. “오물”이란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말의 분뇨와 버려지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4. “위탁기관”이란 제18조에 따라 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승마단체”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승마협회에 소속된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를 말한다.

제4조(개방시간) ① 낙동강승마길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다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로 한다.

2. 공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② 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개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장 및 사용제한 시기) ① 낙동강승마길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근로자의 날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낙동강승마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사용을 제한한다.

1. 제4조의 개방시간 이외 시간

2. 우천기간, 홍수기 및 홍수 예보 기간 등

3. 낙동강승마길 보수 기간

4.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낙동강승마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입

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의 개방시간 및 제5조의 휴장 및 사용제한 시기를 어긴 경우
2. 음주를 하고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오물 수거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와 그 말

제7조(오물 발생 최소화 노력) 사용자가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할 때에는 분뇨 등 오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오물 처리 방법 및 재활용) 발생한 오물은 수거하여 별도 비치된 오물수거함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자연발효 과정을 거친 퇴비는 농가 등에 무상 제공하여 재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수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 뱅킹,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또는 구미시가 승마대회를 주최·주관한 때
2.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승마대회 및 전지훈련

3. 구미시 관내 공공승마장이 보유한 말로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는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 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관내 민간승마장 관계자가 해당 민간승마장이 보유한 말로 낙동강 승마길을 이용하는 경우

2. 관내 주소를 둔 자가 구미시 관내 민간승마장에 위탁관리한 자마 또는 직접 관리하는 말로 낙동강승마길을 이용하는 경우

③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용자가 다른 일자에 낙동강승마길을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상계 처리할 수 있다.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낙동강승마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개인 사정 등에 따라 낙동강승마길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 전일 근무시간내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전액 반환 (다만, 전일이 휴장일인 경우 그 이전 근무일로 한다.)

제12조(세입조치 등) ① 징수한 수수료는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② 수수료로 징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절차와 방법) ①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낙동강승마길 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이 직접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낙동강승마길 사용신청 대장에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서 접수시 또는 낙동강승마길 사용 개시전까지 제9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결제시에는 카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위탁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3의 안전 사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낙동강승마길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오물 수거 및 장비를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승마 과정 중 낙동강승마길 또는 관련 시설물을 손상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7조(질서유지 감독 등) ① 시장은 사용자격기준, 사용자 의무 및 오물 발생 최소화 노력, 개방시간, 사용절차 등 사용자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서유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낙동강승마길 사용 시 야기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승마 관련 보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관리·운영) ① 시장은 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낙동강승마길의 관리·운

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구미낙동강승마길 오물수거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오물 수거 수수료	20,000	1일 1두기준

■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구미낙동강승마길 오물수거 수수료 부과·징수 영수증

(제13조제5항 관련)

(앞쪽)

편 철 부 분	NO.	NO.
	구미낙동강승마길 오물수거 수수료 부과·징수 영수증	구미낙동강승마길 오물수거 수수료 부과·징수 영수증
	1.사용자 •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1.사용자 •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2.사용일자 : 20 년 월 일~ 월 일(일간)	2.사용일자 : 20 년 월 일~ 월 일(일간)
	3.사용마필수 : 두	3.사용마필수 : 두
	4.오물수거 수수료 : 원정	4.오물수거 수수료 : 원정
	20 . . .	20 . . .
	구 미 시 장 ㉠	구 미 시 장 ㉠
2cm	7cm	7cm

(뒤쪽)

편 철 부 분		● 영수증 분실시 재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 개방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전까지입니다. ● 기승능력을 갖춘 사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헬멧, 승마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승마 보험가입을 권장합니다. ● 음주한 사람, 노약하거나 병약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우천시, 우천 전후, 홍수기 및 홍수 예보기간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 구미낙동강승마길이 아닌 하천구역에서 말을 방목(하천법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말이 타인의 농작물을 뜯어 먹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 구미낙동강승마길과 연계해 있는 자연문화자원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구미낙동강승마길이 아닌 구간은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 농기계,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불편사항 연락처 : 000-000-0000
2cm	7cm	7cm

[160mm×50mm(인쇄용지, 70g/㎡)]

■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구미낙동강승마길 안전 사용 수칙
(제14조제2항 관련)

본 구미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고자 하는 승마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구미낙동강승마길 사용 전에 미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개방시간은 구미시승마장 운영시간으로 합니다.
3. 기승능력을 갖춘 사람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헬멧, 승마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승마 보험가입을 권장합니다.
6. 음주한 사람, 노약하거나 병약한 사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우천시, 우천전후, 홍수기 및 홍수 예보기간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8. 오물 발생 최소화 노력 및 적정하게 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9. 구미낙동강승마길이 아닌 하천구역에서 말을 방목(하천법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 말이 타인의 농작물을 뜯어 먹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1. 구미낙동강승마길과 연결해 있는 자연 문화자원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12. 구미낙동강승마길이 아닌 구간은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13. 사람, 농기계,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문의 : 구미시 유통축산과(☎000-0000)

구 미 시 장

■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구미낙동강승마길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사용인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휴대전화 :)			
	사용마필두수 :		두 (마명 :)			
사용기간			입장장소		비고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며, 구미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정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사용인 :						(서명 또는 날인)
구 미 시 장 귀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구미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토록함 ○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마명 ○ 보유 및 사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구미낙동강승마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구미낙동강승마길 사용 신청 대장

[illegible]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인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생략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③ 생략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 ⑧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농어촌형 승마시설"(이하 "승마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 관리, 승용말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승마시설의 신고 등) ①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이용자의 쾌적한 이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승마시설의 운영자는 승마시설의 운영과 관련되거나 승마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생략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7년 하반기 구미낙동강승마길 개장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미낙동강승마길 오물 수거 수수료에 근거하여 세입·세출 등을 기초로 함

□ 구미낙동강승마길 오물 수거 수수료 기준

구분	사용시간	수수료(원)	비 고
오물 수거 수수료	1일 1두	20,0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오물수거 수수료	18,000	36,684	37,380	38,090	38,813	168,967
	소계(a)	18,000	36,684	37,380	38,090	38,813	168,967
세출	낙동강승마길 운영비	16,500	33,627	34,265	34,915	35,577	154,884
	소계(b)	16,500	33,627	34,265	34,915	35,577	154,884
□ 총 비용(a-b)		1,500	3,057	3,115	3,175	3,236	14,083

- ※ 주 1.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매년 적용한다.
2.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해	당	없	음	
민 간						
기 타						
합 계						

5. 부대의견 : 세입(오물 수거 수수료) 및 세출(운영비) 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유통축산과 권용기
연락처	054-480-583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 구미낙동강승마길 오물 수거 수수료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오물수거수수료	18,000	36,684	37,380	38,090	38,813	168,967
계	18,000	36,684	37,380	38,090	38,813	168,967

※ 1차년도 금액은 '17년 하반기(6개월) 반영

2. 세출

- 구미낙동강승마길 연간 운영비 산정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인 건 비	12,500	25,475	25,959	26,452	26,954	117,340
유 지 비	4,000	8,152	8,306	8,463	8,623	37,544
계	16,500	33,627	34,265	34,915	35,577	154,884

※ 1차년도 금액은 '17년 하반기(6개월) 반영

소관 실·과		유통축산과
입 안 자	과 장	장상봉
	담 당	손이석
	담 당 자	권용기 (480-5833)